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7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최기상・김한규・김정호

김 윤 • 백승아 • 박희승

이수진 · 임미애 · 박은정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 중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으로 한다.

다만,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과 36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 조제3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u>소득으로서</u> -----<u>소득</u>. 다만,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단서 신설>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 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제 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 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 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 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과 36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 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
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u>한다)</u>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
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
되지 아니할 것
2) (생 략)

1) <u>임원등</u>

4.·5. (생 략)

2) (현행과 같음)4. · 5. (현행과 같음)